

# 정책자금상담센터 컨설팅 안내



# 기술보증기금

## 정의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키보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보증 업무흐름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1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전화,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2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준비 안내 ·기술력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기술사업의 주요내용 파악
3	접수/조사자료 수집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신속한 보증처리를 위하여 상담일로부터 보증처리과정 모니터링 실시
4	기술평가/조사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를 실시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및 경영상태, 자금상태 등을 확인
5	심사·승인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6	보증서발급	영업점 평가담당자 보증약정 후 전자보증서를 채권기관에 전자발송

## 보증신청 자격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이하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됩니다.

### 신기술사업이란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 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 하는 사업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IT,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대상입니다.

# 기술보증기금

## ■ 보증금지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우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2. 위"1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3.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4. 위"1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5. 위"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 보증제한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 "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 "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 판단정보 중 연체·대위변제(대지급 포함)·부도·관련인·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정보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신용관리정보대상자)
5.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있는 기업
1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우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위"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위"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위"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위"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